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43
----------	-----

제출연월일 : 2008. 6. 1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택경기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승용자동차 세율에서 승합자동차 세율로 변경함(안 제13조제1호).
-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미분양 주택을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함(안 제15조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8. 5. 30. ~ 6. 9. / 접수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상의 입주자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미분양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에 계약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법 제131조제1항제3호(2)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제22조제3항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p>2. (생략)</p> <p>제15조(주택에 대한 감면)</p> <p>① ~ ③ (생략)</p> <p><신설></p>	<p>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제15조(주택에 대한 감면)</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상의 입주자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미분양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에 계약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현행	개정안
<p>제22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략)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안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p>1. 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법 제131조제1항제3호(2)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p> <p>제22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략) ③-----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 -----</p>

관 련 법 령

□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 원	8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 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 원	1,600시시 초과	140원
2,500시시 이하	19 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 원	2,000시시 초과	200원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영업용
고 속 버 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5조 (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제47조까지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

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3.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 주택법

제38조 (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 1.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얻을 것
 - 2.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 3.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②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 ③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건분주택을 건설하는 때를 말한다)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하는

건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한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건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이를 표시(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⑥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동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⑦사업주체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입주자의 모집절차) ⑥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 부터 5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 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13. 입주자의 계약일·계약장소등의 계약사항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